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한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984

발의연월일: 2024. 9. 12.

발 의 자:김한규・이기헌・진선미

임미애 · 신정훈 · 문대림

김태년 • 박홍배 • 박희승

박정현 · 위성곤 · 김영환

박상혁 · 정진욱 · 김성환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피해자가 상담소 등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고충이 발생하고 있고, 이는 피해자에게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.

이에 상담소의 장 등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사실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건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가 진술을 반복할 필요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긴급전화센터,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 상담을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요청 방법・절차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
제9조의2(수사기관의 학	멸조) (생	제9조의2(수사기관의 협조) ①
략)		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	② 긴급전화센터, 상담소 또는
		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 상담
		을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
		아 피해사실 등 대통령령으로
		정하는 사건정보를 경찰관서의
		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
		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
		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
		따라야 한다.
<u><신 설></u>		③ 제2항에 따른 요청 방법・
		절차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
		사항은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한
		<u>다.</u>